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8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건설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12.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redacted]시 [redacted]구 [redacted]동 1681번지, 1682번지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0,220,160원, 지방교육세 5,316,680원, 농특세 6,133,130원, ② 중산동 1681번지 외 1필지에 관한 등록세 8,897,570원, 지방교육세 1,673,590원, 취득세 8,864,210원, 농특세 833,4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5

이 유

1. 행정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4조 제2항은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소장에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15. 4. 27. 청구원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청구원인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